

「금융위원회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」 제정

1. 제정 이유

- 우리 위원회가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「금융위원회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」 제정 추진

2. 주요 내용

◆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절차 및 제반사항을 금융위 훈령으로 규정 (정책연구심의회, 연구과제 및 연구자의 선정 등)

① 정책연구용역 관리 원칙 (§4)

- 정책연구용역의 공정성·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
- 정책연구용역 예산의 효율적 운용
-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품질 및 활용도 제고

② 정책연구심의회위원회 심의사항 (§5)

- 정책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
- 정책연구결과의 평가
- 정책연구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

③ 정책연구심의회위원회 구성 및 운영 (§6~7)

- (구성)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
 - 위원장 :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
 - 위 원 : 금융위원회 과장급 공무원 3명(내부위원), 외부 전문가6명(위촉위원)
 - 간 사 : 금융위원회 혁신기획재정담당관
 - 임 기 : 위촉위원 임기는 2년 (연임 가능)
- (운영)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
- (소위원회) 담당 국장(위원장) 포함 4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

④ 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 (§8~10)

- 연구과제별로 담당과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
- 다른 행정기관이나 정부의 출연·보조를 받는 연구기관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집행중인 연구과제 선정 금지

⑤ 과제담당관 (연구과제 담당과장, §11)

- 해당 정책연구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
- 해당 정책연구결과의 평가
- 해당 정책연구의 공개
- 해당 정책연구의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재·관리 등 업무 수행

⑥ 연구결과의 평가 및 활용 (§13)

- 정책연구가 종료후 외부전문가와 공동으로 정책연구결과 평가
→ 6개월 이내에 활용상황 점검

⑦ 연구결과의 공개 및 관리 (§15~16)

- 공 개 : 과제담당관은 ① 정책연구의 계약 체결 내용, ②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, ③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 공개 등
- 비공개 :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*에 해당時 2년 범위에서 비공개 가능

* 진행중인 재판에 관한 사항, 의사결정·내부검토 과정중인 사항,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사항, 법인·개인 등의 경영·영업상 비밀 등